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최용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1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금융기관의 C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7차전18호로 양수금 12,962,48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3. 29.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 26. C에게 송달되어, 2017. 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D이 2019. 10.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F, G, 피고, C이 있는데, 2020. 1. 28.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

2) 한편 C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3) 피고는 위 분할협의를 따라 2020. 1. 3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9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미등기건물이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02. 5. 13.부터, H와 신용카드 사용약정을 한 후 2003. 3. 27.부터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5. 12. 및 2008. 3. 26. 무렵에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년에서야 비로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7차전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45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각각 2002. 5. 13. 및 2003. 3. 27.부터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그 각 연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4580호로 양수금 12,962,48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3. 29. C에게 송달되어 2007. 4. 13.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 1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C을 상대로 앞서 본 2017차전18호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1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